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4228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진동화(기소), 박민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은진(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795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1.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웹소설 'F'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업로드 화면(증거목록 순번 3), 회신자료, 배타적 발행권 설정에 관한 계약서,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 그 밖에 다운로드 횟수와 업로드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지원 _____